###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4 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복기왕・유동수・손명수

김영배 · 박균택 · 서미화

오기형 • 박홍근 • 이연희

김준혁 • 박용갑 • 강준현

임호선 · 송재봉 · 문대림

이병진 · 양부남 · 김동아

박희승 · 김성환 · 박수현

이재관 · 강훈식 · 박범계

한병도 • 신영대 • 전혐희

이정문 의원(28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.

반면,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,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일상지원을 받을 때, 차량이동 및 주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.

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,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등).

법률 제 호

##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사람이 신청하는 경우"를 "사람 또는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(이하 "활동지원사"라 한다)에게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제3항에"를 "유효기간, 제3항에"로 한다.

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만원"을 "30만원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)	제17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	2
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	
군수・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	
있는 <u>사람이 신청하는 경우</u> 장	<u>사람 또는 「장애인활동 지</u>
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	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호
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	에 따른 활동지원인력(이하
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	"활동지원사"라 한다)에게
한다.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	⑦
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	
·절차, <u>제3항에</u> 따른 회수 및	<u>유효기간, 제3항에</u>
재발급 제한의 기준・절차, 제5	
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	
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	
다.	
제27조(과태료) ①·② (생 략)	제27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
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
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
<u>만원</u>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
다.

1.	· 2.	(생	략`
<b>-</b> •	┙.	\ U	

4	(생	랴
$(\mathbf{I})$	( 0	- $  -$

③	
	<u>30만</u>
원	·
1.•2. (현행과 같음)	

④ (현행과 같음)